

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5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02. .
제 출 자 : 충 주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이 2011. 6. 30부터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목적에 맞게 재난관리기금 적립·운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관리기금 운용범위 확대(안 제3조)

-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: 당초 30퍼센트 ⇒ 15퍼센트

나.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(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 74조)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(안 제6조, 별표1)

-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한 세부내용 신설

다. “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”에 맞게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미첨부사유서) 붙임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그 밖의 사항

(1) 입법예고 (2011. 11. 19~ 12. 08) 의견접수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

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7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

제2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75조제2항에 따른”으로, “30”을 “15”로, “당해연도”는 “해당연도”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7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금융기관이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와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)”를 “(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년”을 “해당연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 1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)”을 “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과 임차비용 용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”로, “실비를”을 “실제 비용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”을 “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수입·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”을 “수입·지출·출납보관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4조제2항의 규정”을 “제4조제2항”으로, “비치하고”를 “갖추어 놓고”로, “증빙서류”를 “증명서류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1인을 포함한 10인”을 “1명을 포함한 1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촉위원 중 질병, 장기출타 및”을 “위촉직 위원이 질병, 장기출타,”로, “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”를 “수행하기 어려우면 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0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12조제4항 중 “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”를 “위원에게는 「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”를 “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”를 “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재난관리기금의 용도(제6조 관련)

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

1. 법 제3조제3호 및 제4조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
재난 예방활동
 - 가.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
 - 나. 풍수해, 설해, 낙뢰, 가뭄 등 자연재난 대비를 위한 물자, 자재, 장비구입 및 임차 등의 사용
 - 다.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나타난 재난위험요인의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·보강
 - 라.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,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
 - 마.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
 - 바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,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
2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
 - 가. 자연재해저감시설 :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·보강사업은 가능
 - 「소하천정비법」 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·호안·보 및 수문
 - 「하천법」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·하구둑·제방·호안·수제·보·갑문·수문·수로터널·운하 및 관측시설
 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
 -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
 -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, 양수장,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, 배수장, 취입보, 용수로, 배수로, 유지, 방조제 및 제방
 -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

- 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댐
 - 「도로법」 제2조제2항의 터널·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·제설시설, 토사유출·낙석방지시설, 공동구, 지하도 및 육교
 -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
- 나. 재난 예보·경보시설 : 설치·보수·보강
-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·경보시설
 -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
 -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
3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- 가. 수해·강풍 등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- 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
- 다.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
4. 충주시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을 위하여 인명구조,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의 구입
5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6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-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 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
-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
-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, 항공사진측량
7. 법 제3조1호 중 감염 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8. 그 밖에 시장이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부칙

589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생략)</p> <p>1. 법 제67조의 <u>규정에 의한</u> 적립금</p> <p>3. <u>기타</u> 잡수입 등</p> 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시장은 누계잔액(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)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(이하 “기예치기금액”이라 한다)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(이하 “<u>당해연도</u>사용 기금액”이라 한다)는 <u>당해연도</u>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제67조에 따라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 (현행과 같음).</p> <p>1. 법 제67조에 <u>다른</u> 적립금</p> <p>3. <u>그 밖의</u> -----</p> <p>제3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75조제2항에 <u>다른</u> ----- ----- <u>15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“<u>해당연도</u> 사용기금액”이라 한다)는 <u>해당연도</u>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)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지정금고(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기관이라 함은 「예산회계법 시행령」 제135조 및 「은행법」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.</p>	<p>제4조----- ----- -----제77조 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다만, 금융기관이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와 「은행법」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.</p>
<p>제5조(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)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·관리)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해당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, 영 제74조제1항 및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6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과 영 제74조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 1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회계공무원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,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회계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제4조제2항 ----- ----- ----- 갖추어 놓고 ----- 증명서류 -----.</p>
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시장은 위촉위원 중 질병,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재난 업무담당이 된다.</p>	<p>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1명을 포함한 10명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 위촉직 위원이 질병, 장기출타, ----- ----- 수행하기 어려우면 해당 ----- -----.</p> <p>⑥ ----- ----- 1명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<u>제10조의 규정에 의한</u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<u>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u> 	<p>제11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<u>제10조에 따른</u>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
<p>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<u>위원에 대하여는 「충주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<u>위원에게는 「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</u>----- -----</p>
<p>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<u>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</u>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제13조(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) ① ----- ----- <u>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(생략)</p> <p>1. 2. 3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</p> <p>③ 시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2. 3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의</u>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</p> <p>③ ----- <u>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4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 ----- -----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재난"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- 가.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낙뢰, 가뭄, 지진, 황사(黃砂), 적조(赤潮)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- 나. 화재, 붕괴, 폭발, 교통사고, 화생방사고, 환경오염사고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
 - 다. 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,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

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
- 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

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
 - 가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
 - 나.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(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·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) 및 보수·보강
 - 다. 재난피해시설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 - 라.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 - 마.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
 - 바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2.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

제75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.
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 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고,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제74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